

www.kosti.or.kr

www.yestrade.go.kr

전략물자 관리제도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MOTIE



전략물자관리원
KOREA STRATEGIC TRADE INSTITUTE

“

수출기업의 리스크관리를 위해서는
전략물자관리제도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Contents

- 03 _ 전략물자란 무엇인가요?
- 05 _ 전략물자에는 어떤 품목들이 있나요?
- 07 _ 전략물자 관리는 왜 필요할까요?
- 09 _ 기술이전도 관리대상이 되나요?
- 10 _ 우리나라는 어떻게 전략물자를 관리하고 있나요?
- 12 _ 기업은 어떻게 전략물자를 관리해야 하나요?
- 15 _ 필요한 수출허가의 종류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 16 _ 선택형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란 무엇인가요?
- 18 _ 기업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전략물자란 무엇인가요?

'전략물자'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해가 전략물자 관리의 시작입니다.

다음 중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것은?

①



②



③



정답은 미사일이라구요?

물론 미사일은 명백한 전략물자이나, 밸브와 테니스 라켓 소재인 탄소 섬유도 각각 성능과 기술 사양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전략물자

- ▶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이들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수 있어 국제평화 및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관리가 필요한 품목입니다.
- ▶ 법적으로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3에 규정된 물품, 기술, 소프트웨어를 의미합니다.

▶ 전략물자의 범위

- ▶ 대부분의 첨단산업제품과 기술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며, 여기에는 일반산업용과 군사용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도 포함됩니다.

▶ 이중용도 품목의 예

	일반산업용	이중용도품목	군사용
1	 샴푸	 트리에탄올아민	 화학무기
2	 테니스 라켓	 탄소섬유	 미사일 동체
3	 인스턴트커피	 동결건조기	 생물무기

- ▶ 트리에탄올아민 : 샴푸 · 화장품 제조에 쓰이지만, 화학무기 원료로 사용 가능하여 전략물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 ▶ 탄소섬유 : 테니스 라켓 소재로 사용되지만, 미사일 동체 제조에 사용 가능하여 전략물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 동결건조기 : 인스턴트 커피 제조용으로 쓰이지만, 생물무기 제조 장치에 사용가능한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전략물자로 분류됩니다.

전략물자에는 어떤 품목들이 있나요?

🔑 전략물자의 구성

전략물자는 무기뿐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이나 산업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품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소재, 생화학, 기계, 전기전자, 항공우주, 해양, 원자력 등 그 범위도 매우 넓습니다.

또한, 이들 품목의 개발·제조·사용·저장 등에 이용될 수 있는 기술 또한 수출관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통제품목

별표2	제1부 : 소재(금속, 세라믹) 화학물질, 미생물, 독소
	제2부 : 소재가공(기계)
	제3부 : 전자
	제4부 : 컴퓨터
	제5부 :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제6부 : 센서 및 레이저
	제7부 : 항법 및 항공전자
	제8부 : 해양
	제9부 : 추진장치, 우주비행체 및 관련장비
	제10부 : 원자력 전용품목
별표3	군용물자품목

10대 전략물자 품목 소개



밸브



펌프



암호화 장비 및 부품



열교환기



밀링가공 공작기계



열화상카메라



플라즈마 건조식각 장비



플루오르화수소



수치제어 소프트웨어



니켈분말

전략물자 관리는 왜 필요할까요?

전략물자 관리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제규범으로, 위반시 수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제31조 제1항)

🔍 국제규범으로서의 전략물자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 규율 준수

국제사회는 핵무기, 재래식무기, 생화학무기 등의 확산을 막기 위한 다자간 수출통제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들 모두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핵공급국그룹 NSG

원자력 전용/이중용도 품목
48개국 가입

호주그룹 AG

생화학무기 및 관련 물품
42개국 가입(EU포함)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

미사일, 무인항공기 및 관련물품
34개국 가입

바세나르체제 WA

재래식무기 및 이중용도 품목
41개국 가입

생물무기금지협약 BWC

생물 작용제
170개국 가입

화학무기금지협약 CWC

독성 화학물질 및 원료
190개국 가입

※ 2014년 3월 기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540호 준수

유엔은 2004년 유엔안보리 결의 1540호를 통해 모든 유엔회원국들로 하여금 전략물자 관리의 이행 및 집행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전략물자의 안전한 무역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시스템을 마련하고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 위반시 제재

전략물자의 수출입 제한 등 (대외무역법 제31조)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동안 전략물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출이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3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을 제한한 자와 외국 정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을 제한한 자의 명단과 제한 내용을 공고할 수 있다.

벌칙 (대외무역법 제53조~제59조)

관련 규정 위반시 7년 이하의 징역, 거래가액 5배 이내의 벌금, 3년 이내의 무역 제한 처분이 부과 가능합니다.

국제 제재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 또는 주요국(미국, EU, 일본 등)의 우려 거래대상자리스트(Denial List)에 등재되어 국제적으로도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불법수출사례



시안화나트륨(청화소다)

1. 사용용도

(군사용) 독성이 있는 시안화 수소가스 발생
(일반산업용) 도금, 의약품, 살충제 등

2. 내용 : W사는 총 6차례에 걸쳐, 1.3억원(107톤)어치의 청화소다를 중국에 불법 수출. 해당 물품이 북한으로 재수출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수출 강행.

3. 처벌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무역금지 1년

기술이전도 관리대상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기술도 전략물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술이전은 전략물자 관리대상에 포함됩니다.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2조)

기술이전의 정의

기술이전이란 USB·CD·매뉴얼 등 기술 자료의 전자적 매체(이메일, 팩스, 전화 등) 또는 그 밖의 수단(우편, 직접 전달 등)을 통한 이전과 기술지도·기능훈련·업무지식 제공·컨설팅 등과 같이 문서나 구두 등을 통한 기술의 지원을 의미한다.

기술이전의 특성

수출형태가 다양

산업재산권, 설계도면이나 기술정보자료와 같은 유형의 기술수출 이외에 과학기술자의 파견이나 전문가의 교류를 통해서도 기술이전 가능

원상회복이 어려움

유형의 물품과 달리 기술은 유·무형의 자료가 전자매체 및 사람을 매개로 전파되므로 이전 속도가 빠르고 수출 후 원상회복 및 회수가 어려움

사후통제가 불가능

기술은 사후관리, 수명연한 종료 등의 조치가 없어 사후통제가 어렵고 기술 응용을 통하여 개량이나 복합기술 개발이 가능하여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기술이전 관리의 중요성

우려국가나 테러조직은 강화되는 수출통제로 전략물자 관련 물품의 획득이 어려워지자 비교적 획득이 용이한 기술을 확보하여 WMD를 자체 개발하려는 시도를 확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민감기술 이전으로 인한 WMD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각국에 기술이전을 더욱 철저히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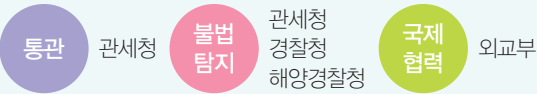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어떻게 전략물자를 관리하고 있나요?

🔍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관리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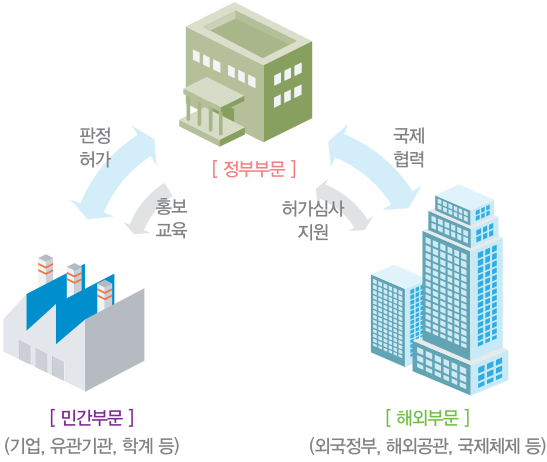
산업통상자원부 · 통일부 · 원자력안전위원회 · 방위사업청에서 수출(반출)허가를, 관세청에서 통관 및 사후관리를, 정부 · 수사기관에서는 불법수출 탐색 및 조사를, 외교부에서는 국제 협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수출허가 소관부처 및 관련 법령

소관부처	근거법령	통제품목
 산업통상자원부 <small>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small>	대외무역법 / 방위사업법	산업용 이중용도품목 / 일반방산물자
 방위사업청 <small>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small>	대외무역법 / 방위사업법	군용물자품목 / 주요방산물자
 원자력안전위원회 <small>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small>	대외무역법 /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전용품목
 통일부 <small>MINISTRY OF UNIFICATION</small>	남북교류협력법	북한반출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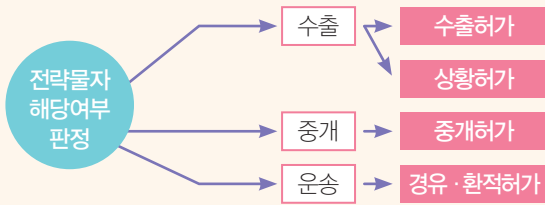
전략물자관리 업무는
다음과 같이 긴밀한 협조 하에 이루어집니다.



기업은 어떻게 전략물자를 관리해야 하나요?

전략물자 관리는 기업의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철저하고 세심한 관리를 통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업은 전략물자를 다음과 같이 관리해야 합니다.



기업이 관리해야 할 각각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판정

취급품목의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은 전략물자 관리의 시작입니다.

자가판정

기업이 스스로 취급품목의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 자가판정시 Yestrade 온라인 자가판정 도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판정

기업이 전략물자관리원에 판정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처리기간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입니다.

※ 신청방법 :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에 접속 → 판정/허가신청 → 사전판정 신청

허가

전략물자에 해당된 품목을 수출 또는 중개·경유환적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부처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심사는 짧게는 5일, 경우에 따라 길게는 15일 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개별수출허가

허가기관의 장이 전략물자의 개별 수출허가신청 건에 대하여 해당 품목과 수량, 최종사용자와 사용 용도를 확인하여 허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황허가

수출 품목이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수입자 또는 최종사용자가 대량 파괴무기(WMD) 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인지하거나 의심될 경우에도 정부로부터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상황허가 신청이 필요한 경우 (대외무역법 제19조, 수출입고시 제50조)

- 수입자가 해당 물품 등의 최종 용도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제공을 기피하는 경우
-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 등이 최종 사용자의 사업분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 거래상대방이 국제연합에서 지정되어 법 제28조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www.yestrade.go.kr)에 게시된 우려거래자 목록(Denial List)에 등재된 경우
- 수출품목이 상황허가 대상 품목(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호의2 해당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상황허가 신청이 필요한 경우 (대외무역법 제19조 제3항)

포괄수출허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받은 기업은 사전 1회 허가로 일정 기간 동안 수출이 가능합니다.

※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별 특례는 수출입고시 별표 19를 확인

중개허가

전략물자를 제3국에서 또 다른 제3국으로 중개하고자 할 경우 정부의 중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경유·환적허가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품목을 경유·환적할 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되거나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전략물자 등을 경유하거나 환적하는 경우
- 정부로부터 경유·환적허가를 받도록 통보받은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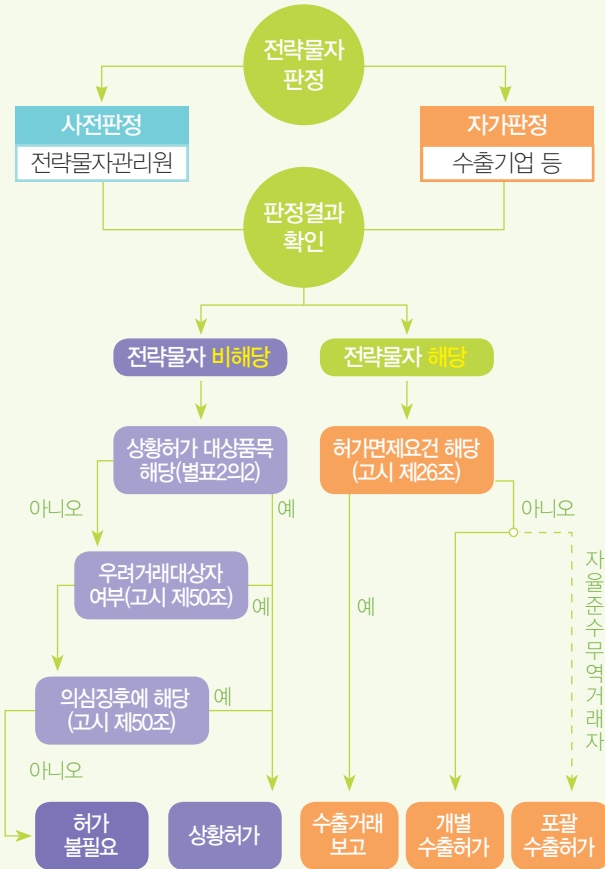
Tips 서류보관 의무의 간소화

기업은 전략물자 수출관리와 관련된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단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시면** 관련 서류가 자동으로 저장·보관되므로 **별도로 보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수출허가의 종류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수출허가 판단절차



선택형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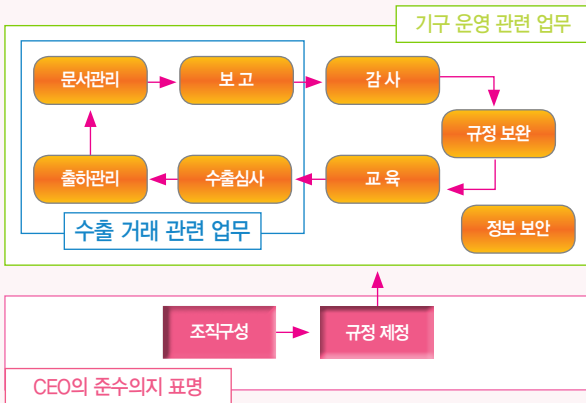
🔍 전략물자 수출관리

취급하는 물품, 기술에 대해 가장 자세히 알고 있는 수출자(기업, 대학, 연구소 포함)가 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 자율준수체제

전략물자 해당 여부 확인, 최종용도/최종사용자 확인 등 거래 관련 제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내부 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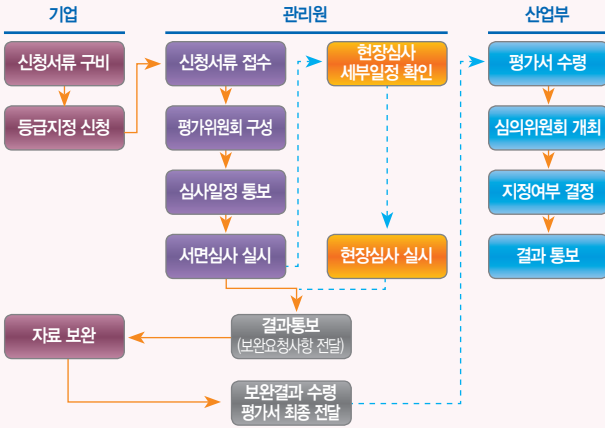
〈 자율준수체제 구성 요소 〉



🔍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자율준수체제를 갖추고 관련 법령에 따라 조직을 운영하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일정 심사를 거쳐 준수 의지와 역량이 있다고 판단 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지정 절차 〉



🔍 선택형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제도

희망 타입에 맞게 요구사항과 특례 조항을 구분 설정하여 기업의 실
효적인 운영을 지원코자 도입되었습니다.

〈 등급별 특례 예시 - 포괄허가 〉

특례		현행	A	AA	AAA
사용자포괄허가("가"지역)	가능여부	○	○	○	○ (동일동재번호)
	유효기간	3년	3년	3년	3년
사용자포괄허가("나"지역)	가능여부	○	×	○	○ (동일동재번호)
	유효기간	3년	×	2년	3년
품목포괄허가	가능여부	×	×	△ (가지역만)	○
	유효기간	×	×	3년	3년
실적보고 주기		반기	반기	반기	연간
운영보고 주기		연간	연간	연간	연간
허가면제사항에 대한 수출거래 보고주기		7일 이내	7일 이내	7일 이내	연간

안전한 수출거래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기업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
한 방안, 선택형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에 있습니다.

기업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전략물자관리시스템

자기판정·사전판정, 수출허가 등의 민원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 온라인 시스템(www.yestrade.go.kr)입니다

주요 기능



- ① 판정 신청(자가·사전판정)
- ② 수출허가 신청
- ③ 전략물자 관리제도 관련 법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수출입고시)
- ④ 국내외 관련 동향

🔍 전략물자관리원

정부와 기업의 전략물자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www.kosti.or.kr)

주요 업무

- ①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
- ②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 운영
- ③ 전략물자관리제도 교육 및 홍보
- ④ 전략물자 수출입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지원
- ⑤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관리 지원



✎ 홈닥터 서비스

중소기업의 자율적인 전략물자 수출관리 지원을 통해 국제 사회의 제재로부터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입니다.

◆ 신청안내 ◆



① 신청페이지

: www.homedoctor.kosti.or.kr

② 신청절차

: Yestrade 로그인 ⇨ 홈닥터 포털 배너 클릭 ⇨ 신청 접수 메뉴 ⇨ 컨설팅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신청서 작성

③ 신청문의

: 기업지원팀 02)6000-6428

✎ e교육관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강의를 통해 기본적인 제도의 이해부터, 판정방법, 허가신청 방법,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신청 및 운영 방법, 해외제도 등에 대해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전략물자 관리시스템

www.yestrade.go.kr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MOTIE



전략물자관리원
KOREA STRATEGIC TRADE INSTITUTE

135-729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삼성동)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2305호
전략물자관리원 TEL. 02-6000-6400 FAX. 02-6000-6420